

춘천지방법원 2020. 8. 18 선고 2020가단145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0. 8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강원도 화천군 C 대 128㎡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식품위생시설 84.94㎡를 철거 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2019. 7. 9.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49,6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 엄상문

별지